

서울특별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 제1865호

나. 발 의 자 : 이숙자 의원(찬성자 12명)

다. 발의일자 : 2024년 05월 27일

라. 회부일자 : 2024년 05월 30일

2. 제안이유

- 정부는 지난 2022년에 장애인의 창업과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을 개정하여 창업 지원 및 창업교육·상담·정보 제공 사업, 장애경제인의 기업경영을 위한 활동 보조인력 지원 사업의 근거 규정을 신설한 바 있음.
- 그러나 현행 조례에는 이러한 법률 개정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바, 서울시 차원의 장애인 창업 지원 및 창업교육·상담·정보 제공 사업과 장애경제인의 기업 경영을 위한 활동 보조인력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 조문을 신설하고자 함.
- 또한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의 위원 자격에 ‘장애인기업인 대표’를

추가하여 보다 실질적인 장애인기업 지원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창업 지원 및 창업교육·상담·정보 제공 사업, 장애경제인 보조인력 지원 사업 등에 대한 근거를 신설함(안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8호 신설)

나.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 위원 자격에 ‘장애인기업인 대표’ 를 추가함
(안 제9조제3항제3호 신설)

4.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이준석)

가. 개정조례안의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의 개정(2022.10.18.)으로 장애인 창업 지원 및 창업교육·상담·정보 제공사업, 장애경제인의 기업 경영을 위한 활동 보조인력 지원사업 등의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이를 서울시 조례에 반영하고,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 위원 자격에 장애인기업인 대표를 추가하여 장애인기업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시에 당사자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나.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의 개정 내용 반영(안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8호)

- 정부는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여 장애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제고하고 경제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을 제정(2005.7.29.)했으며, 이후 장애인기업법은 공공기관 구매촉진(2008.3.28.), 장애인기업활동의 우선 보장(2010.4.5.), 공공기관 우선구매(2016.1.27.), 실태조사 협조의무 부과 및 장애인기업 확인·취소 근거 마련(2017.3.21.), 공공기관의 장애인기업제품 구매계획 의무이행(2018.12.31.)과 같이 장애인기업의 권익을 우선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왔음.
- 그러나 법 제정 이후 15년이 경과되면서 변화된 장애인 정책 및 경영·사업 환경 등을 반영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주요조문이 개정되고(2022.10.18.)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중증장애경제인의 업무지원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 근거가 추가됨(2023.6.20.).

< 장애인기업법 개정(2022.10.18.) 주요 내용 >

조번호	주요내용
제2조제2호	장애인기업의 요건으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을 추가로 규정
제4조	장애인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기관을 확대
제5조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수립을 위하여 종전의 연단위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으로 변경하고, 매년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제7조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종전의 실태 조사를 1년 단위로 실시하도록 하고, 관련 통계의 작성 및 공표를 의무화
제8조의2제1항	장애인의 창업 및 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 유형별 창업 지원방식의 다각화, 정보 접근성 확대를 위한 창업 및 경영 관련 정보의 제공, 장애경제인의 기업경영을 위한 활동 보조인력 지원 등의 사업추진 근거를 마련
제8조의2제2항 및 제3항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자립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특화사업장을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설치·운영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제9조의2제5항 및 제6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장애기업제품 구매계획 이행점검을 위한 구매실적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구매실적이 저조한 경우 개선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조번호	주요내용
제10조 각 호	장애경제인 및 장애인기업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하여 장애경제인 간 협력·조직화, 기업 환경 개선, 역량강화 교육 등 각종 연수·지도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제18조의5	장애인기업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하여 장애경제인 및 장애인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공적이 있는 자, 장애인 고용률이 높은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제품 의무구매비율 이상으로 장애인기업제품을 구매한 기관 등을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그러나 서울시는 장애인기업활동에 대한 지원 및 지원계획의 수립, 장애인기업의 우대, 구매촉진, 홍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를 제정(2015.5.14.)한 이후 이러한 장애인기업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바, 동 개정조례안은 법 개정 내용 중 ▶창업 지원 및 창업교육·상담·정보 제공 사업, ▶장애경제인 보조인력 지원 사업 등에 대한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임.

다. 위원회 위원으로서 장애인기업인 대표 추가(안 제9조제3항제3호 신설)

- 안 제9조제3항제3호는 장애인기업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장애인기업의 우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의 위원 자격에 장애인기업인 대표를 추가함.
- 동 조례의 제정 당시에는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의 기능을 희망경제위원회가 대체하고 있었으나 지난 2023년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폐지(2023.3.24.)됨에 따라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를 별도로 신설하기 위해 조례가 개정된바 있음(2023.7.24.).

- 그러나 동 조례에는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장애인 기업에 대한 전문성과 학계에서 관련 연구 경험이 있는 사람, ▶장애인 기업 관련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등으로 정하면서도 정작 장애인기업지원 정책의 당사자라고 볼 수 있는 장애인기업인이 누락되어 있음.
-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시 장애인기업지원 정책에 장애인 당사자 주의¹⁾를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은 인정됨.
- 다만 현재 서울시는 장애인기업지원에 대한 별도의 예산사업이 부재하고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역시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바, 서울시의 적극적인 사업발굴과 위원회의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임.

담당 조사관	연락처
최범준	02-2180-8056

1) 장애인을 사회에 객체화된 존재가 아닌 주체화된 존재로 인식하고자 장애에 관련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장애인이 전문가임을 주장하고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장애인복지를 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장애인복지로 전환하고자 하는 일련의 이념